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687 |
|----------|-----|

【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09. 5. 4(월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9. 5. 11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9. 5. 15(금)

2. 개정이유

- 가. 특수경력직공무원(별정직공무원)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,
- 나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법의 내용 반영과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코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(안 제4조의2)

-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

나.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

○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(안 제11조제1항)

⇒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)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

○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(안 제11조제2항)

⇒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

다. 근무성적 평정 실시 근거 마련(안 제12조)

-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

4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4항, 제25조의2, 제63조

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
《지방공무원법》

제2조 (공무원의 구분) ①~③(생략)

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·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08.12.31]

제25조의2 (외국인의 임용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08.12.31]

제41조 (휴직자·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) ① 공무원이 **제63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4호·제5호,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**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다만, **제63조제2항제4호**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
제63조 (휴직)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
2. 「**병역법**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
- 3.~5 (생략)

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**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- 1.~3(생략)
4.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
- 5.~6호 생략-

③~ ④(생략)[전문개정 2008.12.31]

5. 개정조례안 및 신규조문 대비표 : 붙임

6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09. 3. 30 ~ 4. 20)

나. 행정안전부의 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”을 근거로 작성

다. 지방별정직 정·현원 현황

| 구 분 | 정 원 | 현 원 | 비 고 |
|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별정7급상당 | 1 | 1 | 총무과 (구청장 비서실) |
| 별정8급상당 | 1 | 1 | 총무과 (구내식당 영향사) |

6.검토의견

○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8.12.31자로 「지방공무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『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』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-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 하도록 임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,
-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법의 내용 반영과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
- 당초,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1명에 1년 이내(여자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)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, 6월 이상이면 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
-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본인이 원할 경우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자가 큰 부담없이

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- 이밖에도, 지방별정직공무원에 국가안보 및 보안·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임용근거를 신설하고,
- 아울러,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.

○ 이와같이 개정이 되면

-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으로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,
- 일한 만큼 대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신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명 : <u>울산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공무원법</u>(이하 법 이 라 한다) 제2조제4항의 <u>규정에 의하여</u> 지방별정 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 및 <u>근무상한연령</u> <u>등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①(생략) ②별정직공무원의 <u>임용등에 관하여</u>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<u>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</u> <u>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 ③이 조례에 <u>의하여</u>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<u>법 제</u> <u>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</u> <u>하는</u> 공무원으로 본다.</p> <p>제4조 (임용자격) ①법 제31조 <u>각호의1에</u>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② ~ ③(생략) <u>< 신 설 ></u></p> <p>제9조 (당연퇴직)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<u>각호의</u> <u>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</u> 당연퇴직 <u>한다.</u></p> | <p>제명 : <u>울산광역시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 (목적) ----- 「<u>지방공무원법</u>」 ----- ----- <u>제2조제4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<u>근무상한 연령 등에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임용 등은</u> ----- ----- <u>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</u> <u>른다.</u> ③----- <u>따라</u> ----- <u>법 제2</u> <u>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</u> ----- -----.</p> <p>제4조 (임용자격) ①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-----. ② ~ ③(현행과 같음) <u>제4조의2(외국인의 임용) 임용권자는 법 제 25조의</u> <u>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 <p>제9조 (당연퇴직)----- <u>각 호</u> <u>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</u> ----- <u>된다.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<u>제10조 (직권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<u>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내지 25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</u> 2. 직제,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<u>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</u> 3.(생략) 4. <u>기타</u>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| <p><u>제10조 (직권면직) -----</u>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-----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「<u>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</u>」 제 18조부터 제 25조에 따른 ----- 2. ----- <u>따라 ----- 정원이 초과된 경우</u> 3.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 -----</u> |
| <p><u>제11조 (휴직)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</u> 2. <u>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)</u> | <p><u>제11조 (병역·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</u></p> <p>① <u>별정직공무원이 법 제 63조제 1항제 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 63조제 2항제 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 조제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법 제 63조제 2항제 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.</u></p> |
| <p><u>제11조의2 (휴직기간)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</u></p> | <p><u>제11조의2 (삭제)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지로 한다.</p> <p>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(생략)</p> <p>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,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.</p> <p>제12조 (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)</p> <p>①별정직공무원이 제 11조제 1호의 사유 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13조 (징계)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 | <p>제11조의3 (휴직의 효력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1조에 따라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-----</p> <p>당연히 복직된다.</p> <p>제12조 (근무성적의 평정)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·절차 등에 준 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 며,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·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.</p> <p>제13조 (징계)----- 「지 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 ----- -----</p> |